미국에서 범죄증가는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의 산물

김 철 희

미국사회에 범람하는 범죄와 그 원인을 법률적으로 까밝히는것은 《자유》와 《민주 주의》의 외피로 미화분식된 미국의 사회 제도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성격을 정 확히 인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사람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고 공명과 출세,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제50권 204페지)

오늘날 미국에서 범죄는 미국사회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사회를 온갖 패륜패덕에로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고질적인 악성종양으로 변해가고있다. 그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약육강식의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제도자체에 근본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법률적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미국통치배들의반동적인 형사정책과 범죄자들에게 온갖 범죄적행위의 공간을 합법화하고있는 반인민적인 형사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의 반동적통치계급에 의하여 실시 되고있는 그릇된 형사정책과 반인민적인 형사재판제도는 미국을 범죄의 소굴로 몰 아가는 중요한 법률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범죄증가가 미국의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의 산물로 되고있는 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미국의 통치배들이 형사정책작성의 기초인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중요한 법률적수단 으로 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사회가 적대계급으로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형사관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것은 지배계급의 중요한 통치수법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형사관계를 통한 지배가 극소수 반동적통치계급의 계급적요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력대 미국의 통치배들은 형사적지배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중요한 공간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를 정당화할수 있는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은 해당 사회에서 반범죄투쟁과 관련하여 내세우고있는 지 배계급의 정책으로서 여기에는 범죄에 대 한 통치계급의 관점과 립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형사법상의 모든 법률적제 도들은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에 의하여 규 제되며 또 형사정책은 바로 범죄를 대하 는 관점과 립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지배계급의 관 점과 립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형사정책의 내용과 그 성격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의 통치배들은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합법적수단으로 리용하 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반동적인 견해와 관 점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파쑈적인 형사재 판제도를 확립하여놓았다.

우선 미국의 통치배들은 사회계급적현 상으로서의 범죄를 저들의 계급적지배실 현에 맞게 심히 외곡하였다.

그들은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 실현의 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회의 본질적내용으로, 사회를 이루는 하 나의 구성요소로 정의하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더우기 현시기 미국집권층의 정책적대변자들은 범죄가 《모든 사회의 기준》이며 지어 《필요이고 특성》이라고 반동적인 궤변을 마구 줴치고있다.

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범죄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외곡이다. 왜냐하면 범죄는 사회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로서 반드시 제거되여야 할 사회적독소이기때문이다.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가 결코 사회의 본질로, 그 구성성분으로 규정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범죄에 대한 미국통치배들의 이와 같은 외곡은 범죄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계급적요구를 보다 손쉽게실현해나가자는데 있다. 미국의 통치배들은 바로 범죄에 대한 《조종》을 통하여 미국사회에 범죄에 대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과 함께 파쑈적통치의 수단인 형사재판제도의 존재를 합리화하며 범죄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사람들속에 반동적인통치기판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초기부터 범죄와 관련하여 그의 근절에 대하여 론하지 않았으며 범죄의 《조종》,《통제》만을 주장하여왔던것이다.

오늘 미국에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있는 총기류범죄와 같은 살인범죄들이 없어지지 않고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실은 바로 미국통치배들의 범죄에 대한 반동적인 견해와 립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미국의 통치배들은 지배계급의 계급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파쑈적인 형사재판제도를 확립하여놓았다.

형사관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력대 미국통치배들의 책 동은 범죄에 대한 반동적인 외곡과 함께 방 대한 파쑈폭압기구를 확립해놓고있는데서 도 나타나고있다. 오늘 미국사회에 세워져 있는 형사재판제도와 전국에 그물망처럼 늘여져있는 형사재판기구들은 결코 미국사회의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구가 아니라 철저히 계급적지배를 위한 통치계급의 형사정책실현의 적극적수단으로 복무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국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 사정책은 그것이 범죄를 정치적지배실현 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사 회를 범죄의 나락에로 몰아가는 법률적요 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미국에서 범죄증가가 미국의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의 산물로 되고있는 것은 다음으로 미국에서 형사정책집행의 실 제적수단인 형사재판제도자체가 범죄자들 에게 자기의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고 형 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합법적공간들을 적지 않게 부여해주고있는 반인민적인 법률제도이기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련방과 주, 지방의 5만개이상의 방대한 기관들이 형사재판체계에 망라되여있으며 여기에는 경찰과 재판기관, 그리고 감옥과 같은 교정기관들이 속한다. 범죄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형사재판기관들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범죄가 늘어나고있는것은 바로 범죄를 직접 담당하고 처리하는 형사재판제도에 적지 않은 결함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형사재판제도가 가지고있는 이러한 결함들은 바로 미국사회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형사재판제도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범죄자들에게 형사적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공간들을 주고있다.

경찰과 재판, 교정단계로 구성되여있는 미국의 형사재판제도는 그 하나하나가 그 무슨《인권》과《민주주의》의 미명아래 통 치계급에게 범죄를《조종》할수 있는 유리 한 법률적수단들을 마련해주고있으며 범 죄자들이 마음대로 활개칠수 있는 합법적 공간들을 제공해주고있다. 특히 범죄자들 에 대하여 범죄적책임을 확증하고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재판단계는 범죄자들이 저 들의 형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은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있다.

오늘날 불문법에 기초한 소송위주의 미국의 형사재판제도는 매우 복잡한 구조와 절차들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저들의 형사적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주고있다.

실례로 미국형사재판의 재판전단계에 있는 《소송교섭》절차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명 《죄상인정여부수속》이라고도 하는 《소송교섭》은 기소단계에 있는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판사와 검사, 피고, 변호사들사이에 재판심리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부과할 처벌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사소송절차이다. 형사소송의 이 공간은 범죄자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기의 형사적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 형사피고의 90%이상이 바로 이 절차에 의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처리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수많은 범죄자들이 응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지 않고 사회로 나가고있다. 이러한자들이 다시 범죄의길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결코 장담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형사재판은 그 심리단계에서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할수 있는 합법적공간들도 제공하고있다.

일명《합법변호》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 는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적행위를 변호할 수 있는 수많은 사유들을 규정하고있으며 이것을 리용하여 범죄자들은 범죄적행위 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있다.

실례로 《합법변호》사유의 하나인 정신 병은 범죄자가 범죄감행시 정신병상태에 있 었다는것을 증명하면 그에게 범죄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 《변호사유》로 되여있다. 그 런데 미국에서 범죄자의 정신병상태에 대한 결정은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기관이 결정하는것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적지 않은 범죄자들이 이 공 간을 리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82년 미국에서 당시 대통령이였던 로날드 레간을 암살하려고 총 탄을 안긴 죤 힌클레이라는자가 범죄감행 시 정신이상이였다는 법적인 《결정》에 따라 무죄로 석방된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밖에도 범죄자들이 돈과 권력으로 저들의 형사적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당화할수 있는 공간은 미국형사소송의 여러 단계와 절차들에 뻐젓이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옹호한다고 하는 형사재판제도가 미국의 온갖 범죄를 만연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의 형벌체계는 실제상 형벌적가치 가 없는 종류들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형법규범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국가의 강제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범죄자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 경제적제재를 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 것은 범죄가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돌이 킬수 없는 부정적결과를 발생시키는 위험 한 행위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이러한 범 죄에 대처하는 형벌은 자연히 강제적인 성 질을 가지게 되며 형벌이 이러한 강제적 인 제재수단으로 될 때 형벌로서의 자기 사 명을 다할수 있다.

오늘 미국에서 적용하고있는 과반수의 형벌종류들은 사실상 형벌이라고 말할수 없 는 《형벌》들로 되여있기때문에 이것이 사 회의 범죄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추동하는 법 률적공간으로 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적 용되고있는 형벌에는 《사형》, 《감금》, 《중 간처벌》,《집행유예》,《벌금》등 5가지의 종류로 구성되여있으며 여기서 《중간처벌》 과 《집행유예》, 《벌금》은 《사회적처벌》로 되여있다. 이 《사회적처벌》이라는것은 국 가적인 강제시설에서가 아니라 말그대로 사 회에서 집행하는것을 말한다. 형벌이 가져 야 할 강제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물질적 인 제재의 성질을 띠지 못한 이러한 《형 벌》들을 결코 형벌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 와 같은 《제재》방식이 극단한 개인리기주 의와 황금만능의 미국사회에서 범죄자를 《개조》하는 형벌적수단으로 결코 될수 없 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시기 미국의 어용형법학자들이 그 무슨 《사회적속성》을 떠들면서 내세우고있는 《사회적처벌》들은 그것이 가지고있는 제재의 빈약성과 불철저성으로 하여 미국사회에 범람하는 범죄를 《통제》하는 형사법적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들이 마음놓고 범죄적행위를 감행하도록 추동하는 적극적작용을 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형벌로 되고있는것이다.

실례로 형벌의 한 종류인 《중간처벌》들 중에서 비교적 처벌강도가 높다고 하는 《사 회복귀훈련소》처벌만 놓고보더라도 이곳 은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와 수법을 터득하는 범죄의 서식지로 되고있다. 보통 6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사회복귀훈련소》는 감옥에 있던 범죄자들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익숙시키기 위하여 거치는 《중간길》로 되여있다고 하지만 그곳이 온갖 부류의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오합지졸의 집합지인것으로 하여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법과 방법을 배우고 교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숙련된 범죄자로 《개조》시키는 장소로 되고있다. 결국 미국은 《사회복귀훈련소》와 같은 처벌기관들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범죄자》들을 양성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미국에서 형벌이 사회의 범죄를 징벌하는 형사적수단으로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범죄적행위의 롱락물로, 사회에 범죄를 조장하는 법률적인 요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미국사회의 심각한 범죄문제는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제도를 어떻게하나 유지공고화하려는 미국지배층의 반동적인 형사정책과 그에 의하여 확립된 형사재판제도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우리는 미국사회의 범죄와 그를 대하는 미국통치배들의 관점과 립장을 통하여 미 국사회제도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에 대하 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